

# '94년도 환경영정

'94년부터 환경기술감리제도가 폐지되고 수질오염을 현저하게 오염시키는 공산품은 판매나 사용이 금지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유독물 등 환경 전 분야에서 작년과 크게 달라지거나 신설된다.

다음은 '94년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이다.

- 환경영향평가: 새해 하반기부터 새로 제정된 환경영향평가 법이 발효, 이에따라 사업자가 작성한 평가서에 대해 사업승인기관이 환경처와 협의하고 평가서 검토과정에도 참여하게 된다.

또 협의내용을 환경처와 사업승인기관이 이중으로 관리하고 협의내용을 미이행하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

주요항목에 대해 중점평가제가 도입되고 평가서를 작성하는 기준비용이 고시된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하고 일정 범위의 주민요구가 있을때는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 수질: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삭제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개시후 즉시 조업할 수 있게 되고 정상운영하지 않는 경우를 4개유형으로 구체화 했다(수질, 대기, 소음·진동 공통 사항).

하천이나 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측정 대행자 지정제도가 등록제로 전환되는 동시에 현재의 정수제한 규정이 폐지돼 신규영업이 자유로워진다.

별칙규정이 미비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자가측정 미이행 등 경미한 법규위반은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된다.

-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상운영하는 경우는 △배출시설가동시에 방지시설을 가동치 않거나 오염물질을 회석배출하는 경우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현저하게

부식 또는 마모되어 오염물질이 누출되도록 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운용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 했다.

공동방지시설 등을 변경신고하지 않은 경우, 측정결과 미보존 또는 허위기록 등 오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위반행위가 현재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된다(수질, 소음·진동 공통).

대기환경기준이 대폭 강화되는데 아황산가스는 현재 연간 0.05ppm에서 0.03ppm으로 강화되고 하루기준이 0.15ppm에서 0.14ppm으로 강화되는 동시에 1시간 평균기준(0.25ppm)이 신설된다.

먼지기준이 현행 총먼지기준에서 인체에 미치는 미세먼지기준으로 바뀌고 오존,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의 장기기준을 폐지하는 반면 단기기준을 기준으로 신설해 강화한다.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가 시·도지사로 바뀌고 전용공업지나 공단 등에 위치한 공장은 배출시설 허가에서 제외되나 배출허용기준은 준수해야 한

다.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사업 스스로 설계 시공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소음·진동지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시간제한을 할 수 있다.

방음벽, 방음림, 방음둑 등의 방음시설의 성능이나 설치기준을 환경처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하 고 환경처장관은 고소음을 발생하는 기계, 기구, 기타제품에 의 한 형식승인을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게 소음표지를 부착해 판매 토록 권고할 수 있게 된다.

• 오수·분뇨·축산폐수: 수질을 현저하게 오염시키는 특정공 산품을 판매, 사용금지를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다.

축산단지나 기타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축산폐수정화시설을 공동 설치할 경우 환경처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자가설계 및 시공 범위를 협약 신고대상인 축산폐수시설에서 허가대상인 시설까지 확대하고 축산폐수 배출부과금의 체납을 막기 위해 가산금 및 증가 산금제를 도입하여 특별대책지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신고대상 미만의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타지역은 협행처럼 관리되고 간이축산폐수 정화조의 유지관리기준이 신설된다.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온 정화조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계 및 시공업도 환경처장관에게 등록로 일원화,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 및 시 공업자가 분뇨처리시설이나 축산 폐수 공동정화시설 등을 시공할 경우 그 시공이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더라도 건설업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설계 시공을 할 수 있게 된다.

• 폐기물: 폐기물 예치금과 부 담금제가 새해부터 대폭 개선된다.

우선 예치금 대상에 음식료류 와 주류의 PET병, 의약품의 종이 팩, 금속캔, 유리병, PET병이 추가된다. 요율도 의약품용 유리병, 음식료류, 주류 등이 오르고 기존 예치금 대상에서 화장품, 살충제, 부탄가스, 유독물제품, 전자류, 합성수지 등이 부담금 대상으로 전환된다.

재활용 사업자로 제지, 제철, 유리용기, 플라스틱제조업자 등이 새로 지정되고 이들 업체는 정부가 정한 기준, 즉 '94년까지 제지 47%, 유리 42%, 철캔 25%, 폐플라스틱 5%의 폐자원의 일정비율을 사용해야 한다.

유리용기의 규격화 및 철재질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로 써야 하며 자동차와 냉장고 등 가전품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고려한 제품으로 구조나 재질을 개선해야 한다. 철강슬래그나 석탄재 배출업체는 발생하는 철강 슬래그 등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해 재활용해야 한다.

'일반폐기물의' 수수료가 협행 정액제에서 발생량에 따라 부과되는 종량제가 3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일반 폐기물 수집기능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업무와 연계시켜 일원화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 수집기능을 전담하고,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재활용품의 안정적 수급 및 기술개발을 전담하게 된다.

특정폐기물의 종류가 현재 유 해성, 부폐성 중심으로 21종 32개 항목에서 유해성 개념으로 18종 23개항목으로 조정돼 폐합성수지, 폐합성피혁, 폐석고, 폐석회, 동물성잔재 등이 일반으로 분류된다.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3천명 이상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나 조리판매업소에서 배출되는 음식폐기물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은 탈수하며 미생물에 의한 감량화가 의무화되고 정부가 정한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경우엔 반드시

해당국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유독물질관리 : 유해물질 간 이심사대상 화학물질을 현 3개국에서 2개국에 발간된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된 화학물질로 확대되고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물질에 문방 및 화방용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특정형태의 고체화학물질, 기계장치류에 내장된 화학물질 등이 추가된다.

유독물관리자 자격인정범위가 유독물사업장에서 유독물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자로서 유독물질 관리협회장이 실시하는 유독물관리 실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확대한다.

## '94년도 환경처 예산

환경처의 '94년도 예산은 '93년도 보다 21.7% 증액된 총 규모 1천 98억원이며 전체 예산은 다음 표에 부문별로 총괄하여 나타내었다. '94년도 환경처소관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최근 일반국민들의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보전 및 폐기물관리 부분으로 전체의 64%인 7백억원을 투입하는게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94년도 폐기물분야 예산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용자를 포함하여 총규모 430억원으로 전체의 40%을 차지하고 있다.

이 폐기물관리예산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특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일반폐기

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집중 건설하는데 쓰인다.

오는 '97년까지 중금속 등이 함유된 유해한 특정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국 6개 권역에 특정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낸차별로 확충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 43억원, 호남권 69억원, 중부권 35억원, 경북권 2억, 경남권 23억원이 투입 된다. 광역쓰레기처리장 건설은 '91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원주권, 청주권, 전주권, 경주권 등이 '93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장수권, 용인권, 여수권 등 총7개 지역이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94년에 실시할 예정인 곳은 정주권, 영주권, 안동권, 진해권,